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

제106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
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(2021. 7. 16.)

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(건설해양농림위원회)

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1. 7. 16.
건설해양농림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7. 7. 이천수·심영석·김경수·주철우·구점득·권성현 전홍표·조영명·백태현·김종대·박춘덕·백승규 김인길·김장하·전병호 의원(15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7. 9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(2021. 7. 16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이천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에 따라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○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○ 4에이치활동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○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○ 사업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○ 보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정회교)

▣ 제정의 목적 및 필요성

- 본 제정조례안은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제5조에 따라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·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※ 경남 지자체 조례 현황 : 8개(도 1, 기초 7)

- 거제, 고성, 산청, 양산, 의령, 거창, 사천

▣ 주요내용

-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
- 안 제3조에 **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 매년 수립·시행**에 관한 사항
- 안 제4조에 **4에이치활동 사업**에 관한 사항
- 안 제5조에 4에이치활동 단체의 **경비지원**에 관한 사항
- 안 제6조에 **사업계획의 제출**에 관한 사항
- 안 제7조에 **보조금의 결산보고**에 관한 사항
- 안 제8조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**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준용**

▣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으로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및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함으로써 4에이치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사 항

❑ 2021년 4-H 예산현황

사업명	예산액(천원)			사업내용
	계	도비	시비	
계	38,200	6,240	31,960	4개 사업
4-H 농업정보지 지원	11,700	2,340	9,360	○ 대 상 : 4-H회원 및 유관기관 ○ 사업량 : 390명(월2회 발송) ○ 내 용 : 4-H신문 구독료 지원
청년4-H회 과제 교육 지 원	5,000	1,500	3,500	○ 대 상 : 청년4-H회 회장(제병기) ○ 사업량 : 회원 39명 ○ 내 용 : 마케팅 교육, 재배 컨설팅 등
학교4-H회 과제 활동 지 원	8,000	2,400	5,600	○ 대 상 : 학교4-H 가입 학교 ○ 사업량 : 11개교 ○ 내 용 : 학교별 과제활동비 지원
4-H회 육성지원	13,500	-	13,500	○ 대 상 : 4-H회 ○ 내 용 - 역량강화 현장 교육 지원 - 과제교육 재료, 홍보·전시 행사 지원

4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